

가입자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DC/기업형IRP)

담당자	책임자

iM뱅크 앞

제도구분	<input type="checkbox"/> 확정기여형(DC)	<input type="checkbox"/> 기업형IRP
------	------------------------------------	---------------------------------

기업정보

기업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퇴직연금 계좌번호	575 - 10 -112962 - 9
등록방법	<input type="checkbox"/> 개별 등록 <input type="checkbox"/> 일괄 등록	등록가입자수	명

※ 일괄등록 시 EXCEL파일 제출

가입자 등록/변경 [3304]

1) 기본정보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

2) 가입자 정보

임직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손실비율통지	%
입사일자	년 월 일	중간정산일	년 월 일
제도전환/계약이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퇴직연금 가입일자	년 월 일

3) [선택 정보] 휴/복직 구분 [3305]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휴직 <input type="checkbox"/> 복직	등록일자	년 월 일
휴직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정 <input type="checkbox"/> 병가 <input type="checkbox"/> 출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20 년 월 일

【추가 서류】 체크 [V]

 일괄등록 (EXCEL 파일)

기업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고인감/서명)
-----	-------------	-----------



운용방법 및 비율등록 신청서(공통)

판매직원명 (필수) 직원성명	담당자	책임자
-----------------------	-----	-----

운용지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운용지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선택한 운용방법과 투자상품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용지시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구분	<input type="checkbox"/> 확정급여형(DB) <input type="checkbox"/> 확정기여형(DC) <input type="checkbox"/> 기업형IRP <input type="checkbox"/> 개인형IRP
적립금 구분	<input type="checkbox"/> 회사부담금 <input type="checkbox"/> 가입자부담금

신청정보

기업명 (DB/DC/기업형IRP)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퇴직연금 계좌번호	575 - 10 -112962 - 9
가입자명(DC/IRP)		생년월일(DC/IRP)	년 월 일
E-mail		휴대전화	

예금성 상품(정기예금 등) 선택 시(해당사항 V 체크)

<input type="checkbox"/> 일반금융소비자 - 만19세 미만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만65세이상	<input type="checkbox"/> 전문금융소비자 - 만19세이상 ~ 만65세 미만 성인 - 법인 · 조합 등 단체
<input type="checkbox"/>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지만 예금상품 설명을 듣기를 희망하는 경우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방법/ 비율등록 운용지시 【 계속성 운용지시 1회성 운용지시】 【3252】

상품명/포트폴리오명	운용비율(%)	운용지시 적용기간(1회성의 경우)
운용 비율 합계	100%	

☞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는 계속성 운용지시를 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를 신청하시는 경우 운용하실 포트폴리오명을 기재해 주시고 '로보어드바이저 운용 신청서(공통)' 추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고객 유의사항 확인

1.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예금자보호 확인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2.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운용지시에 대한 확인

-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된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아이엠뱅크 정기예금 가입은 불가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님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용됩니다. 단,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운용지시 시점에 따라 자동 재예치 후 해당 운용지시 내용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 확정급여형(DB)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서 정한 금융기관 간 상품교환 한도초과 등)에는 현금성자산(대기자금)으로 운용
 - 2)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개인형IRP
 -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폐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시행, 2022.07.12)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펀드 상품과 함께 구성된 원리금보장상품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 됩니다.
 - ① 사전지정운용제도 신청 고객: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매수)
 - ② 사전지정운용제도 미신청 고객: 현금성자산(대기자금)으로 운용

3. 원리금 비보장상품 운용지시에 대한 확인

-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성향분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에 따라 가입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간이/정식)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비중이 총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저축은행 정기예금 운용지시에 대한 확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운용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법적 투자한도는 예금자 보호한도(저축은행별 5천만원)와 동일하며 당행은 이자금액을 감안하여 **저축은행별 원금기준 4,500만원으로 투자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 다만 금융기관과 복수로 퇴직연금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5. 펀드 투자자 유의사항

- 본인은 해당상품의 투자가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니며,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기 전 자산운용과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환매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약관,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상품설명서를 확인하고 이해하였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의 과거 수익률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 마감후 거래규제제도]에 의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시간 이전 매입/환매 신청건을 기준시간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재투자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상품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집합투자상품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며, 아이엠뱅크의 업무기준 또는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예금의 구속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추가 불입이 불가하거나 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펀드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펀드로 편입되어 운용사가 임의 해지 할 수 있습니다.

6. DC/IRP 사전지정운용방법(직접 운용지시:오프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 3(이하 "사전지정운용제도")에 의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직접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 단, 사전지정운용제도에 의해 매수된 적립금이 있는 경우 동일한 디폴트옵션 상품에 한해 직접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 복수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의 직접 운용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복수의 디폴트옵션 상품 중 일부를 매도하여 단일 디폴트옵션 상품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류 수령 및 설명에 대한 이해 확인

- 본인은 운용지시한 상품과 관련한 계약서류*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수령방법 : 서면 문자 이메일)
(☞ 모든 계약서류*는 서면으로 필수 제공되고, 약관/상품설명서는 선택하신 방법으로 추가 제공됩니다.)
- 본인은 운용지시한 상품의 주요 내용 및 고객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신청정보와 확인사항에 동의합니다.

*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고객님의게 제공됩니다.

☞ 계약서류: 금융상품의 계약서, 금융상품의 약관, 금융상품의 설명서

20 년 월 일

가입자명
(기업명)

(인도인명/서명)

담당자

책임자

통지서비스 신청서(가입자용)

DGB대구은행 앞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해지
통지항목 구분	<input type="checkbox"/> 서비스통지(선택)	<input type="checkbox"/> 법률통지	<input type="checkbox"/> 서비스통지(기본)

☞ 신청하신 통지서비스는 대구은행에 등록된 고객정보(CIF) 기준으로 발송되며 연락처 미등록 또는 연락금지요청 등의 사유로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업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퇴직연금 계좌번호	575 - 10 -112962 - 9
가입자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		E-mail	

고객 유의사항 확인

- ※ 서비스통지(선택) 항목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사항이며, 통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수신거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통지(선택) 항목은 개별 선택 또는 전체항목 선택도 가능합니다.
(체크시 서비스통지(선택) 해당 항목이 계약신규 이후부터 자동 적용되어 통지됩니다.)
- ※ 법률통지 및 서비스통지(기본)항목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주요정보이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거부의사가 없을 경우 가입자의 E-mail로 자동 발송됩니다. (가입자 교육자료, 운용현황보고서, 원리금보장 상품 만기도래 등) 법률통지 및 서비스통지(기본) 항목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시거나 특정항목만 통지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의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서비스통지(기본)항목 전체가 가입자의 E-mail로 발송됩니다.)

서비스통지(선택) 【 수신거부 전체선택 】 【3313】

DB, DC, IRP	발송구분	발송기준
가입자부담금 입금 통지(DC/IRP)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회사부담금 입금 통지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개인형IRP 연금지급 통지(개인IRP)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개인형IRP 퇴직금 입금 안내(개인IRP)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현금성자산 내역 통지	<input type="checkbox"/> E-mail	매월
퇴직금 지급신청 결과안내(DB/DC/기업형IRP)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시
운용방법 및 비율등록변경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시
목표수익률 및 손실감내율 도달 통지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보유상품변경 결과안내(즉시/예약)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시
재정검증결과 근로자 통지(DB)	<input type="checkbox"/> E-mail	매년
폐업업체 업무처리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분기

☞ '전체선택'시 발송구분이 E-mail과 SMS 로 나누어져 있는 항목들은 E-mail로 자동 발송됩니다.



관리번호: _210×297mm_인쇄일자: 2023. 2

DGB대구은행



이 문서는 대구은행의 문서로 목적 외의 사용을 금하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

2024-04-16 10:33:14 / 2025904 / 24124599-1971-4061-8864-0CE14A54B30A

법률통지 【 수신거부 】

DB, DC, IRP	발송구분	발송기준
운용현황통지(통보주기선택: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연)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SMS	매월
회사부담금 미납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시
분기당 추천 포트폴리오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분기
수익률 손실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가입자교육	<input type="checkbox"/> E-mail	매년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사전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취소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 이전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 법률통지항목은 가입자의 특별한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전체항목이 자동으로 가입자의 E-mail로 발송이 됩니다.

서비스통지(기본) 【 수신거부 】

DB, DC, IRP	발송구분	발송기준
계약정보 등록 및 변경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시
부담금 입금내역 안내(안내주기선택: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연)	<input type="checkbox"/> E-mail	매년
개인형IRP 연금신청 및 정보변경 안내(개인IRP)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시
퇴직연금 정기예금금리 및 펀드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매월
수수료 납부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E-mail	매년
퇴직연금 가입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시
운용상품 판매종료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시
자산 운용을 위한 신상품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시
퇴직연금 ETF 통지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안내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SMS	수시

☞ 서비스통지(기본)항목은 가입자의 특별한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전체항목이 자동으로 가입자의 E-mail로 발송이 됩니다.

☞ 일부 항목의 경우 SMS를 선택하시면 E-mail대신 SMS로 관련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가입자		
-----	--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사전지정운용방법 등록/변경 신청서(DC/IRP)

판매직원명 (필수) 직원성명	담당자	책임자
-----------------------	-----	-----

iM뱅크 앞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퇴직연금 DC/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고객님의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엠뱅크에서 고객님의게 제시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님의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결정하신 후 선택(□)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제도구분	<input type="checkbox"/> 확정기여형(DC) <input type="checkbox"/> 기업형IRP <input type="checkbox"/> 개인형IRP		
기업명 (DC/기업형IRP)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퇴직연금 계좌번호	575 - 10 -112962 - 9
가입자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		E-mail	

사전지정운용방법 등록/변경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변경		
위험등급	사전지정운용방법		선택 (택1)	원금보장여부
초저위험	아이엠뱅크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input type="checkbox"/>	보장
저위험	아이엠뱅크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1		<input type="checkbox"/>	비보장
저위험	아이엠뱅크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2		<input type="checkbox"/>	
저위험	아이엠뱅크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3		<input type="checkbox"/>	
중위험	아이엠뱅크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1		<input type="checkbox"/>	
중위험	아이엠뱅크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2		<input type="checkbox"/>	
고위험	아이엠뱅크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1		<input type="checkbox"/>	
고위험	아이엠뱅크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2		<input type="checkbox"/>	

※ 상기 제시된 각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상품 내용, 투자 위험/수익구조, 자산배분현황, 수수료 등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C 가입자의 경우, 규약 내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고객 유의사항 확인

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대한 안내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였을 때로부터 2주 이내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가입 후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계약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부터 2주 이내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 가입자가 동일한 상품으로 운용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주기로 인해 만기가 여러 번에 걸쳐 도래하는 경우 이를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하여 최초 만기시에만 가입자통지와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이후 만기도래분부터는 만기도래 즉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합니다.



관리번호: _210x297mm_인쇄일자: 2024. 6

2.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에 대한 안내

- 고객님의께서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아이엠뱅크의 신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엠뱅크는 고객님의 선택한 상품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유, 변경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 승인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됩니다.
- 기타 사전지정운용제도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절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 중이라도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될 경우 고객님의 운용하고 있는 전체 적립금의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전지정운용제도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예금자보호 확인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6. 펀드 투자자 유의사항

- 본인은 해당상품의 투자가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니며,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기 전 자산운용과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환매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약관, 투자설명서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고 이해하였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의 과거수익률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마감후 거래규제제도]에 의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시간 이전 매입/환매 신청건을 기준시간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재투자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상품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집합투자상품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며, 아이엠뱅크의 업무기준 또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예금의 구속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추가 불입이 불가하거나 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펀드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펀드로 편입되어 운용사가 임의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 수령 및 설명에 대한 이해 확인

- 본인은 운용지시한 상품과 관련한 계약서류*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수령방법 : 서면 문자 이메일)
- 본인은 상품의 주요 내용 및 고객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신청정보와 확인사항에 동의합니다.

※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고객님의께 제공됩니다.

☞ 계약서류 : 금융상품의 계약서, 금융상품의 약관, 금융상품의 설명서

20 년 월 일

가입자명 (기업명)		(신고인감/서명)
---------------	--	-----------

아이엠뱅크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핵심)상품설명서

- 본 설명서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판매사가 고객님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편입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개별 구성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 본 상품은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 구성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본 설명서는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명	아이엠뱅크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은행이 정한 투자위험등급	5등급(초저위험)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개별 구성상품의 위험등급을 구성비중별로 가중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적용		
적합고객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 손실발생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디폴트옵션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1등급 (초고위험)	2등급 (고위험)		3등급 (중위험)	4등급 (저위험)	5등급 (초저위험)
	투자설명서상 펀드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원리금보장상품	-	-	-	-	저축은행예금	은행 예·적금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투자자성향	위험등급의 의미 개별상품 가중평균 등급 ^{주)}		유의사항		
	1등급 (초고위험)	공격투자형	1.0~1.8 등급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고위험)	적극투자형	1.9~2.6 등급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중위험)	위험중립형	2.7~3.4 등급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저위험)	안정추구형	3.5~4.2 등급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 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초저위험)	안정형	4.3~5.0 등급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 손실발생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은 개별 구성상품의 위험등급을 구성비중별로 가중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위험등급은 운용실적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구성상품 상세 내용		(작성기준일 : 2025.04.01)	
상 품 명	아이엠뱅크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고용노동부 승인번호	제 2022-019 호	고용노동부 승인일자	2022년 11월 2일
상품특징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반영하여 정기에금에 100% 투자하는 상품으로 장기투자 목적에 적합하게 만기 3년 이상 상품으로 구성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성상품별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상품	구성상품 1	구성상품 2	구성상품 3
	부산은행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3년제)	경남은행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3년제)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3년제)
구성비율	40%	40%	20%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5등급(초저위험)		
예금자보호 여부	대상		
중도해지 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으나,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집합투자증권(펀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3에서 정의하는 「투자성상품」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조1에서 정의하는 「예금성상품(예·적금)」과는 아래와 같이 구별됩니다.		
	원 금 비 보 장	수수료 발생 가능	지속적인 보수 발생
	해지시 불이익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취소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본손실 위험이 있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 선취수수료가 있는 상품의 경우 실제 납입금액보다 상품 매입금액이 적을 수 있음 상품 운용(운역)의 대가로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보수 비용이 발생 해지 시점의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 원본보다 적은 금액 수령 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가능		
	◆ 디폴트옵션 상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당행)는 가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즉시 통지합니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해지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을 포함한 3가지 이상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은 해당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되며,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통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과,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될 경우 가입자가 운용하고 있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도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금융시장 상황 및 구성 상품의 위험등급 변경 또는 가치변동 등으로 인하여 구성 상품의 변경 또는 비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구성상품 또는 비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변경 사실 등을 통지하고, 변경 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변경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이전하여 운용하게 되며, 이를 희망하지 않는 가입자는 스스로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스스로 선택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2 민원 · 상담이 빈번하여 속지가 필요한 사항

1. 디폴트옵션은 어떻게 운용 되나요?
<p>가입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 을 통지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됩니다.</p> <p>신규 가입 시엔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p>
2. 디폴트옵션 상품을 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p>디폴트옵션 상품 운용 시 상품을 구성하는 집합투자상품(펀드)의 비용은 발생하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성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보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 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p>
3.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면 예금 등 기존의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자동재예치는 어떻게 되나요?
<p>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는 불가합니다. 반면,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이 혼합된 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한 경우 편입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동재예치가 허용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만기 도래 시 가입자통지(4주) 및 대기시간(2주) 등 6주의 적용 절차가 진행됩니다.</p>
4. 기존 가입자도 디폴트옵션 상품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요?
<p>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은 기존 적립금의 운용방법과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는 1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p>
5. 다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품에서 개별 구성상품을 각각 별도로 운용지시(매수/매도)할 수 있나요?
<p>포트폴리오형 디폴트옵션 상품은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므로, 포트폴리오 구성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p>

